

#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재정 독립성 강화 방안



May 17<sup>th</sup>, 2018

민 병 주, 김경모 (UNIST)  
김만웅 (KINS)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연구내용**

**III IAEA 권고사항**

**IV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재정체계**

**V 주요국의 원자력 안전 재정체계**

**VI 재원방법 검토**

**VII 원자력안전규제 재정의 독립 방안**

**VIII 요약 및 제언**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원자력 규제·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이 진흥기관 [과학기술정통부 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 또한 규제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자율성·독립성이 확보되어 규제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다년차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정부의 원자력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와 진흥의 원천적 분리를 통해 **규제 독립성 확보 및 자원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2. 연구내용

### 독립된 규제·감독활동 재원을 위한 원자력 안전기금 운영방안 마련

- IAEA 권고사항 및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 관련 예산 체계 사례 조사
- 국내·외 사례 및 원자력 안전 규제 특수성을 고려한 기금체계 제시

### 원자력안전 관련 예산운영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

-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상 독립기관 사례 및 예산 심의·편성 체계 조사
- 규제 예산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또는 대체방안 제시
- 규제 사업 및 연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년차 관리방안 마련

### 3. IAEA 권고사항

#### IAEA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8 원자력 안전 기준

- 규제기관은 원자력기술의 진흥, 시설 활동을 책임지는 기관 혹은 조직과 독립되도록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 한국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 [1996년10월 24일 발효]

- 체약국으로, 원전 안전 규제 및 관리 기관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규제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위해 필요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함.

## 4.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재정 체계 (1)

### 원자력 안전규제 재정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 제17조 및 18조에서는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재원사항을 규정

- ①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②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③ 원자력 통제.
- ④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

## 4.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재정 체계 (2)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 규정

- 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 원자력안전법상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 ③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 ④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 ⑤ 정부의 출연금.
- ⑥ 정부가 아닌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⑦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⑧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⑩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차입금.
- 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4.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재정 체계 (3)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원체계



## 5. 주요국 원자력안전 재정체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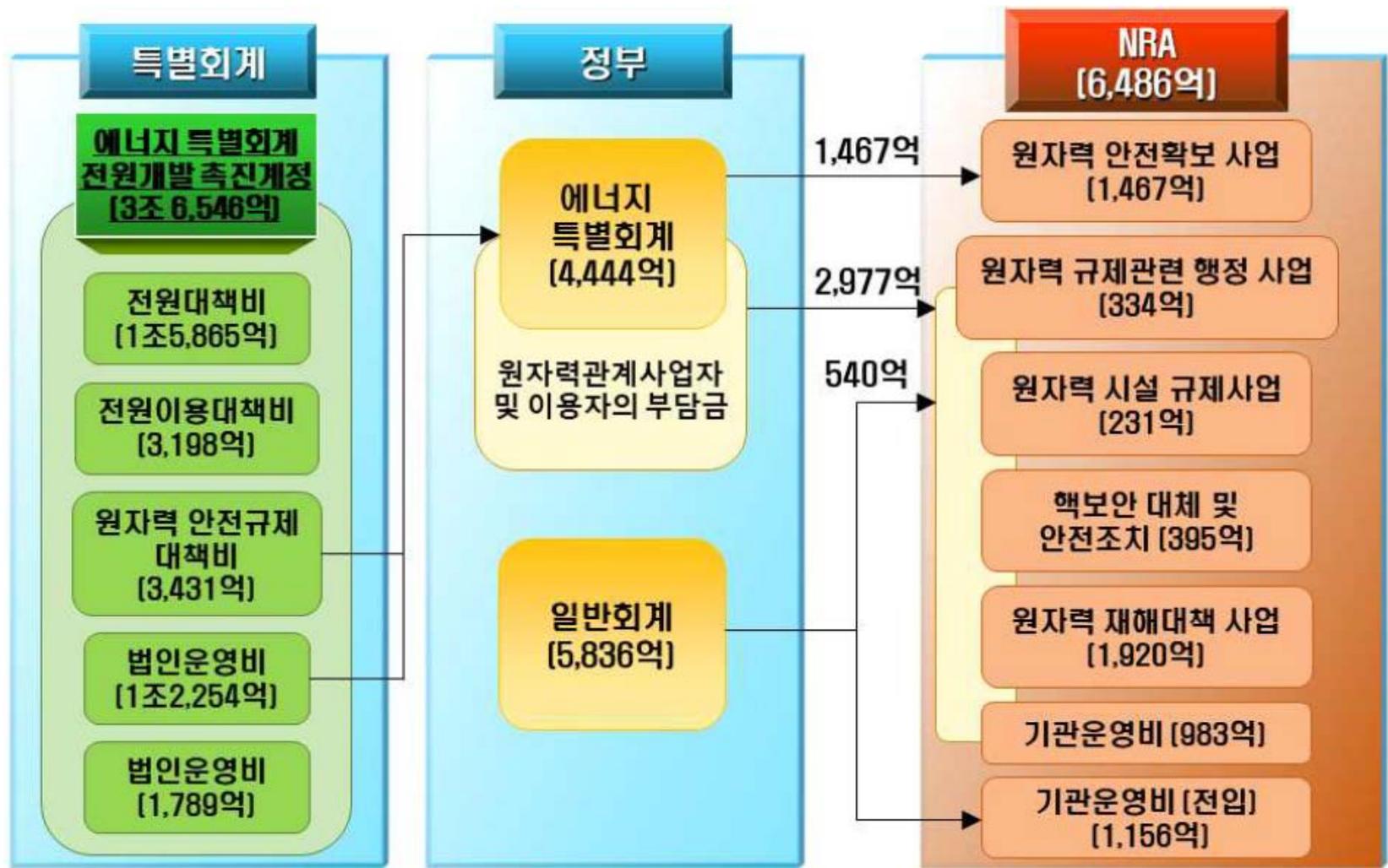
### (1) 일본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재원구조

#### 일본 에너지특별회계 구조



# 5. 주요국 원자력안전 재정체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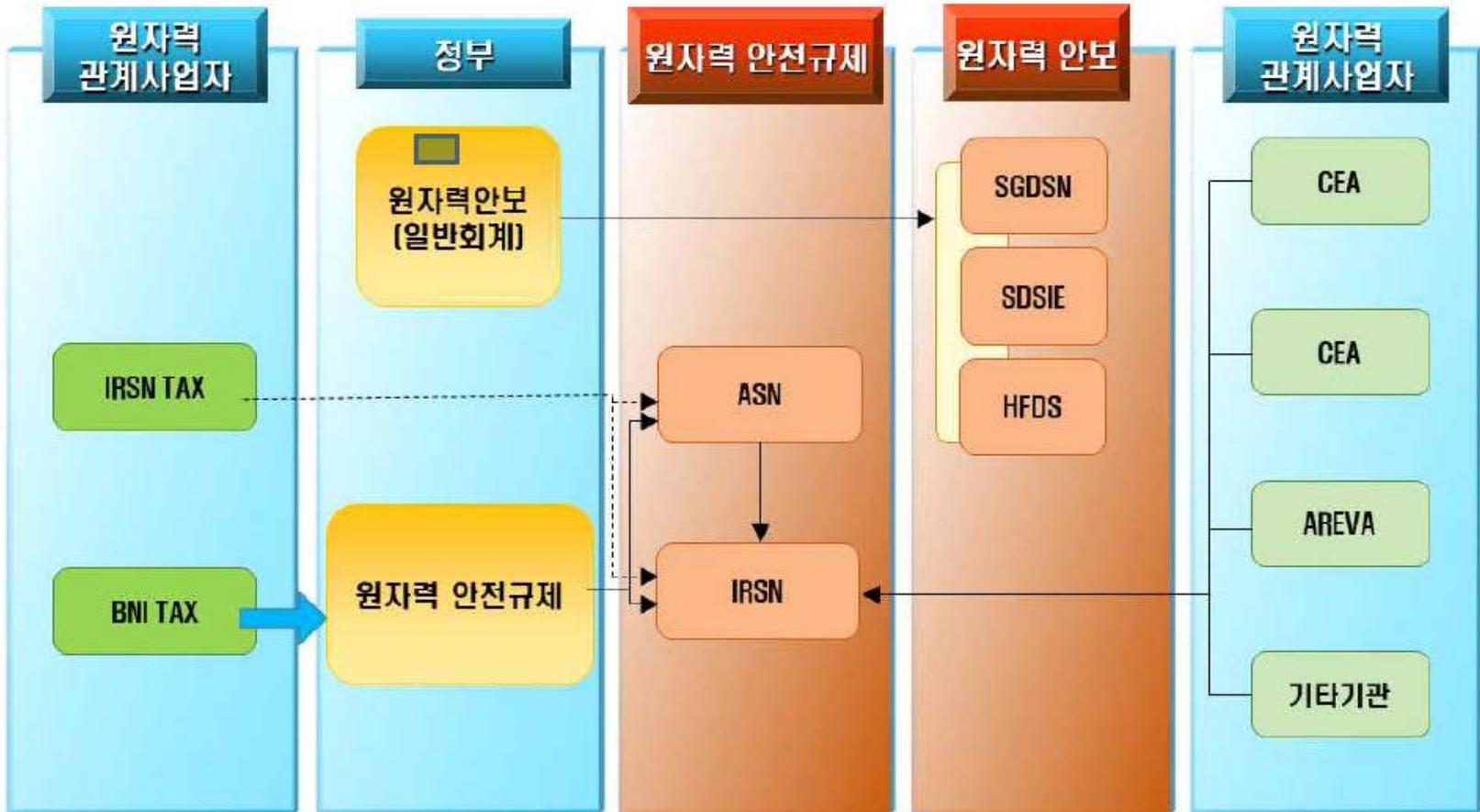
## 일본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재원 규모



# 5. 주요국 원자력안전 재정 체계 (3)

## [2]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재원구조

프랑스 원자력기금 및 원자력안전 재원의 구조 (13년도)



## 6. 재원 방법 검토: 기금과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 분석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사유	국가고유의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및 특정자금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수입과 지출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기금과 동일)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가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과 여유자금을 신축적 운용
집행절차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	(일반회계와 동일)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사업예산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일반회계와 동일)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계획변경	추경예산편성	(일반회계와 동일)	주요 지출항목의 30~5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 및 승인		

## 7. 원자력안전규제 재정의 독립 방안 (1)

### 가. 특별회계법 제정

- 특별회계예산이 일반회계예산과 다른 특징은 독립된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종 부담금, 출연금, 자금운용수입 등이 별도 재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음.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회계법  
( 약칭: 원자력안전관리회계법 ) (제1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 안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0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사업“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회계(이하 “이 특별회계“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제111조의2 1항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계정과 제6조 6항의 원자력규제연구개발을 위해 원자력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원원자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수익금계정으로 구분한다.

## 7. 원자력안전규제 재정의 독립 방안 [2]

### 나.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 원자력진흥법 제18조(기금의 관리·운영)에서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을 삭제한다.

<p>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lt;개정 2015.6.22.&gt;</p> <p>② 기금은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lt;신설 2015.6.22.&gt;</p>	<p>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lt;개정 2015.6.22.&gt;</p> <p>② 삭제</p>
<p>제18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gt;</p> <p>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gt;</p> <p>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7. 원자력안전규제 재정의 독립 방안 [3]

### 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 원자력기금에서 진흥과 규제의 재정 독립을 위해 원자력진흥법 제17조(원자력 기금의 설치)에서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계정을 삭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자력안전법에 관련 해당조항을 개정한다.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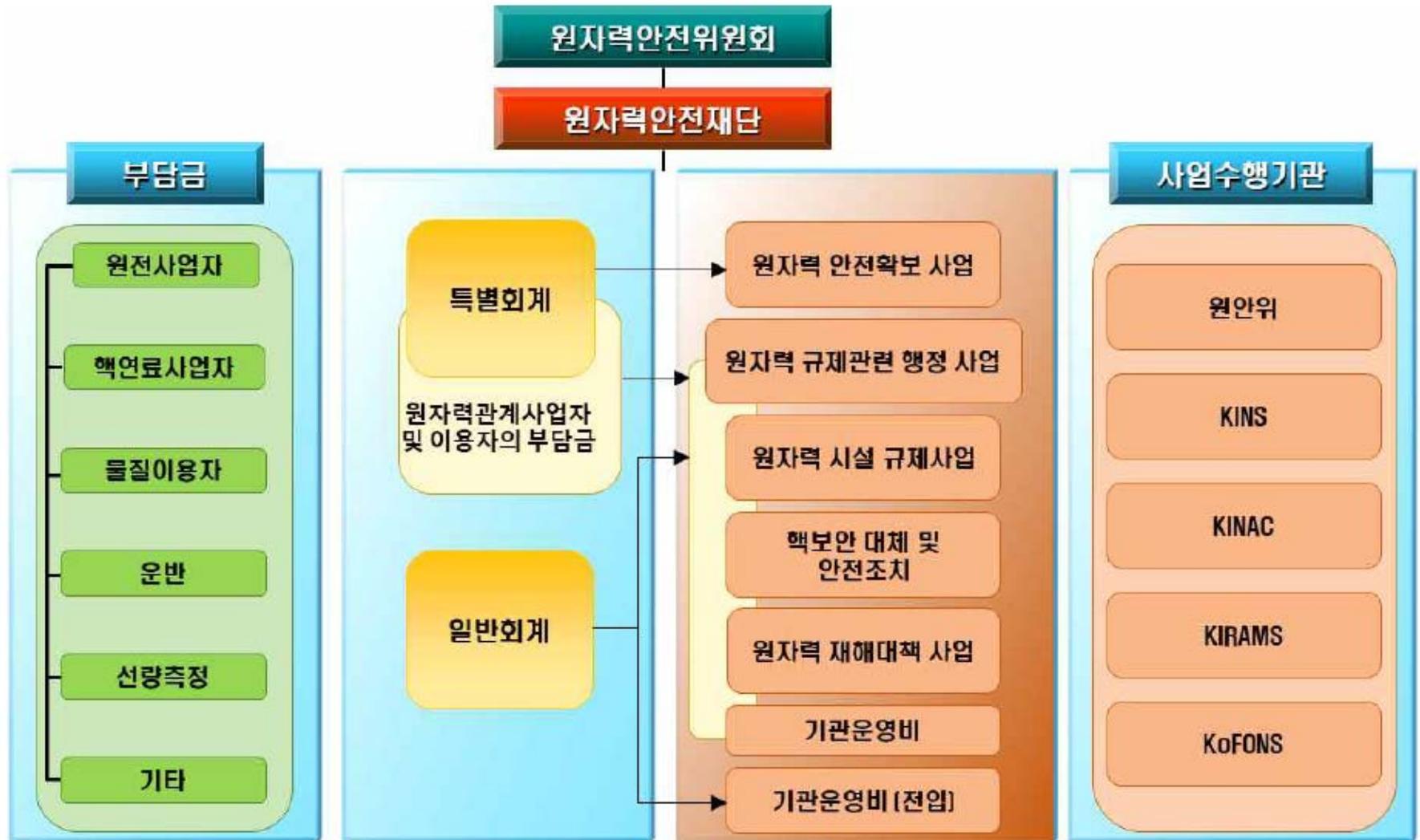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제111조의4(재원) 제111조의3원자력안전관리사업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7. 원자력안전규제 재정의 독립 방안 (4)

## 안전규제 특별회계법 제정 시 안전규제예산 체계



## 8. 요약 및 제언

-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규제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다년차 사업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함.
- 그러나 원자력안전규제활동은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원자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IAEA 권고사항의 규제기관 독립성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규제와 진흥의 원천적 분리와 재원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국가과학기술법,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원자력안전기금의 신설 “[1안] 또는 “[가칭]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회계법[2안]” 을 제시하여 향후 관련 규정 제·개정 등에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음.

# Thanks for your attention

